

#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10. 28) 상정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이태경 기획감사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전담 부서의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우리 구의 인력 증원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32명을 633으로 함
- 순증되는 보강 정원에 대해서는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 시점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조치함

## 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- 행정자치부의 시·군·구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는 우리 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'98년도 1차 구조조정과 '99년도 2차 구조조정으로 총 정원의 규모를 축소 하였으나
- 정부의 시·군·구 정보화 사업의 확대추진(10개→21개 업무) 운영할 전담 인력의 보강과 정보화 사업의 지속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